

##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경 의원 발의]

#### 1. 제안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례의 목적 등을 정비하고,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의 취업·창업지원과 자녀 양육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상위법과 본 조례의 목적인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부합하도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의 목적에 맞게 시장의 책무와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5조제1항).

다.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중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여 정비함(안 제6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종류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의 취업·창업 지원과 자녀 양육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마. 지원의 중지여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6월 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은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317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9일

발의의원 : 한은경 의원

찬성의원 : 장인수,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 제안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례의 목적 등을 정비하고,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의 취업·창업 지원과 자녀 양육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상위법과 본 조례의 목적인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부합하도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의 목적에 맞게 시장의 책무와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5조제1항).
- 다.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중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여 정비함(안 제6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는 여성 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종류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의 취업·창업 지원과 자녀 양육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 마. 지원의 중지여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1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현행조례 : 별첨2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를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를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 등을 위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창업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지원
8. 일·육아 병행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지원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오산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 ----- -----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한부모가족의 <u>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u>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u> ----- ----- -----.</p> <p>② <u>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u>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u></p>	<p>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 -----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 등을</p>

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  
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  
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  
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  
모가족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  
우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  
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  
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 5. (생략)

위한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① -----  
-----  
-----.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  
며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  
당하는 사람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  
지시설-----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서 제외하거나 지원수준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신 설>

<신 설>

7.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9조 · 제10조 (생 략)

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 창업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지원

8. 일 · 육아 병행 맞춤형 일자  
리 발굴 및 연계 지원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  
원을 받은 경우

제10조 · 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 【별첨1】

# 관계법령 발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 **[별첨2]**

# **현 행 조 례**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12년 11월 12일 조례 제12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오산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지원계획
3.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2. 아동·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7.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